

2011. 12. 16. (목) 10:00

제17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10. 11. 16.
- 제출자: 거창군수
- 회부일자: 2010. 11. 17.
- 상정·의결일자: 2011. 12. 14.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 의안번호: 제2010 - 55호

2. 제안근거 및 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중인 기금에 대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

3. 기금운용 계획안(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도 운용계획안			2011년도말 현재액
		수 입	지 출	차액(적립)	
2 건	824,200	622,832	800,000	△ 201,778	647,032
옥외광고정비기금	0	24,610	0	0	24,610
재난관리기금	824,200	598,222	800,000	△ 201,778	622,422

4. 전문위원 검토의견

<도시건축과 소관>

□ 옥외광고정비기금(p55)

-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기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충당 하기 위하여 2010. 3. 29 조례 제1967호로 제정되어 2011년도 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계획으로 기금 2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 2011년도 기금운용(조성)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은 없으며 증 수입 1,300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익금 20,000천원, 이자수입 310천원, 옥외광고 수익금 3,000천 원으로 총 24,610천원 조성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없음.

<재난관리과 소관>

□ 재난관리기금(p60)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시설 및 장비의 확보, 신속한 복구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2011년도 법정 적립금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

- 2011년도 기금운용(구성)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824,200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77,222천원, 도비전입금 400,000천원 이자수입 21,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출계획은 월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800,000천원임.
- 법정 적립금 확보, 기금사업의 목적 및 사용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수정내역: 해당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변동조서: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